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-51호

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-49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2년 9월 27일

우정사업본부장

#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

## 1. 우편물 반송정보 제공서비스 개요

가. 다량 일반통상 우편물 발송업체가 봉투표면에 인쇄필수 사항(반송사유란, 반송정보이용 우편 표시, 반송처, 고객바코드(bar code)를 인쇄하여 발송하고, 집배원이 우편물 반송사유를 반송사유란에 √ 또는 ○으로 표기하여 우편집중국으로 반송 처리

나. 우편집중국은 반송우편물을 관할 '반송정보 분석센터'로 일괄 발송

다. '반송정보 분석센터'는 반송사유와 발송인의 고객바코드(bar code)를 분석하여 파일 형태로 우편물 발송업체에 제공

※ 업무프로세스

| |
|---|
| 우편물(반송사유란·반송처·고객바코드(bar code) 인쇄) 접수 → 집배원 배달시 반송사유란(지환일부인)에 √ 또는 ○으로 표기 후 반송 → 수용 집중국은 관할 「반송정보 분석센터」로 일괄 발송 → 「반송정보 분석센터」 반송사유 분석 → 이용업체에 반송 정보(파일) 제공 |

## 2. 계약관서 및 이용대상

가. 계약관서: 전국 우편집중국

나. 이용대상: 반송사유를 제공받고자 하는 1회 1만통 이상 일반통상우편물 발송자(특수통상 제외)

다. 계약기간: 2년 단위(계약관서와 발송인(업체) 간 계약 체결)

## 3. 서비스 종류 및 이용조건

| 서비스 종류 | 개요 및 이용조건 |
|---|---|
| Ⅰ형<br>(반송사유+<br>리스트+영상) | o 개 요: 반송사유란을 인쇄하여 "반송사유, 반송우편물 리스트, 영상"을 제공받고자 하는 규격 일반통상 우편물<br>o 이용조건<br>- 3가지 인쇄 조건(반송사유란, 반송처, 고객바코드(bar code)) 준수<br>- 우편물 좌측 하단에 '반송사유란'과 '발송인'란 하단에 "반송처 : 우편집중국 사서함 99호(999-999)"를 인쇄<br>- '고객(수취인)바코드(bar code)'는 계약관서가 부여한 기관코드(6자리)를 포함하여 1차원 바코드(bar code)는 40자리, 2차원 바코드(bar code)는 206자리 이내로 인쇄<br>※ 기관코드(이용자번호)는 "반송정보 분석센터"와 협의하여 계약 체결 시 부여 |
| Ⅱ형<br>(리스트+영상) | o 개 요: 반송사유란을 인쇄하지 않고 "반송우편물 리스트와 영상"을 제공받고자 하는 규격 일반통상 우편물<br>※ 반송사유가 불필요하거나 미관상 우편물 표면에 반송사유란 인쇄를 원치 않는 경우<br>o 이용조건<br>- 인쇄 조건 중 2가지(반송처, 고객바코드(bar code))만 인쇄 |

| 서비스 종류 | 개요 및 이용조건 |
|---|---|
| | - '발송인'란 하단에 "반송처 : 우편집중국 사서함 99호 (999-999)"를 인쇄<br>- '고객(수취인)바코드(bar code)'는 계약관서가 부여한 기관코드(6자리)를 포함하여 1차원 바코드(bar code)는 40자리, 2차원 바코드(bar code)는 206자리 이내로 인쇄 |
| Ⅲ형<br>(리스트) | o 개 요 : 반송사유란을 인쇄하지 않고 "반송우편물 리스트"만을 제공받고자 하는 규격외 일반통상 우편물<br>※ 규격외 우편물은 자동화 기계처리가 불가하여 "반송우편물 리스트"만 제공<br>o 이용조건<br>- 인쇄 조건 중 2가지(반송처, 고객바코드(bar code))만 인쇄<br>- '발송인'란 하단에 "반송처 : 우편집중국 사서함 99호 (999-999)"를 인쇄<br>- '고객(수취인)바코드(bar code)'는 계약관서가 부여한 기관코드(6자리)를 포함하여 1차원 바코드(bar code)는 40자리, 2차원 바코드(bar code)는 206자리 이내로 인쇄 |

※ '반송정보 제공서비스' 이용 우편물은 반송처 상단에 반송정보이용 우편 표시

**4. 반송정보 제공 수수료: 건당 30원**

※ 서비스 종류(Ⅰ형·Ⅱ형·Ⅲ형)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

**5. 반송우편물 처리**

가. 이용 계약에 의하여 반송우편물은 15일간 보관 후 폐기

나. 반송우편물 분석정보(리스트, 영상)는 3개월 보관 후 폐기

※ '발송인'(업체)이 실물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부 가능

## 부칙

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-49호(2011. 10. 4.)는 폐지한다.

< 별첨 >

# 우편물 기재사항 규격

□ 우편물 인쇄 규격




□ 세부 규격

| 구 분 | | 내 역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① 반송처 | | 반송처 : 우편집중국 사서함99호<br>999-999 | • 서울·동서울·부천·부산·대전·광주 우편집중국에 반송정보 분석센터 운영<br>• 관할 반송정보 분석센터로 일괄 발송 |
| ② 반송 사유란 | |  | • SIZE : 가로50 × 세로24(±5%)<br>• 라인두께 : 0.1 ~ 0.3mm<br>• 글자크기 : 5pt 이상<br>• 검정 또는 군청계열<br>• 반송사유표기방법<br>(우편물 배달현장에서 √, ○ 표기)<br>• 기타사유(부전지내용을 직접기재)<br>해외전출,재개발,사망,군입대 등 |
| ③고객 바코드 (bar code) | 1 차 원 | 자릿수 | • 40자 이내(숫자, 영문)<br>기관코드(6자)+고객관리정보(34자) |
| | | 종 류 | • Code128, Code39, 2of5 |
| | | 해상도 | • 300dpi 이상(레이저프린트) |
| | | 규 격 | • 길이 : 100 ~ 150mm, 높이 : 7 ~ 15mm |
| | 2 차 원 | 자릿수 | • 206자 이내 (숫자, 영문, 한글, 특수문자)<br>기관코드(6자)+고객관리정보(200자) |
| | | 종 류 | • Datamatrix |
| | | 해상도 | • 300dpi 이상(레이저프린트) |
| | | 바코드(bar code) | • 길이 : 12 ~ 20mm, 높이 : 12 ~ 20mm |

※ 기관코드(6자리)는 www.cpost.kr 또는 「반송정보 분석센터」(02-458-4701)에서 확인

□ 서비스 종류별 필수인쇄 사항

| Ⅰ형 | Ⅱ형 | Ⅲ형 |
|---|---|---|
| ①반송처+②반송사유란+③고객바코드(bar code) | ①반송처+③고객바코드(bar code) | ①반송처+③고객바코드(bar code) |

※ 모든 「반송정보 제공서비스」 이용 우편물은 반송처 상단에 반송정보이용 우편 표시